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 유예 알림

1. 관련: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-619(2024. 7.18.)호
2. 최근 식품업체에서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기 오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3. 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시키는 사례가 아닌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단되며,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기 제작된 포장재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을 유예하고자 하니 관내 가공업체에 지도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단속유예 사항: 팜유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, 팜에스테르화유(팜유100%, 경화)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※ **팜유(원료명)**, **팜에스테르화유(원재료명)**
- 나. 단속유예 대상: '24. 7. 25. 현재까지 제작된 포장재에 한함
- 다. 단속유예 기간: '24. 7. 29. ~ '25. 12. 31.
- 라. 단속유예 조건: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위 사실을 공지하여야 함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각 시도(나 01-18), 한국식품산업협회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산지관리과)

주무관

김일호

사무관

김동영

농축산위생품 2024.07.26.

질팀장

강승극

협조자

시행 농축산위생품질팀-3970 (2024. 07. 26.)

접수 M00010997149

(2024. 7. 26.)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3층 (어진동)

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277

팩스번호 044-868-9219

/ rladlfgh@korea.kr

/ 비공개(5)
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